|  |  |  |
| --- | --- | --- |
| **《융자리스화물 수출세금환급 관리방법》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56호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에서 발의한 전국적으로 실행되는 융자리스화물 수출세금환급 정책 시행에 관한 통지》(재세 [2014] 62호)에 근거하여, 국가세무총국은《융자리스화물 수출세금환급 관리방법》을 제정하였다. 이를 발표하며,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4년 10월 8일  **융자리스화물 수출세금환급 관리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에서 발의한 전국적으로 실행되는 융자리스화물 수출세금환급 정책 시행에 관한 통지》(재세 [2014] 62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수출세금환급 정책을 지원받는 융자리스기업(이하 ‘융자리스임대 측’)의 관할 국가세무국은 수출세금환급(면제) 자격의 인증 및 융자리스수출화물, 융자리스해양건설구조물(이하 ‘융자리스화물’)의 수출세금환급 심사 및 심사비준 등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제3조** 수출세금환급을 지원받는 융자리스임대 측과 융자리스화물의 범위, 조건 및 수출세금환급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재세 [2014] 62호 문건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  **제2장 세무등기, 수출세금환급(면제) 자격인증 관리**  **제4조** 융자리스임대측은 소재지 관할 국가세무국에서 세무등기 및 수출세금환급(면제) 자격인증을 처리한 후, 융자리스화물 수출세금환급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 융자리스임대측은 최초 융자리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 관할 국가세무국에서 수출세금환급(면제) 자격인증을 처리해야 하고《국가세무총국의 (수출화물 및 노무 증치세와 소비세 관리방법)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24호) 규정된 자료(해양건설구조물 융자리스만 경영하는 경우《대외무역경영자 비안등기표》또는《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의 수출입 화물 수하인/송하인 통관등록 등기증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이외에 아래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융자리스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증명  (2) 융자리스계약서(법적 효력이 있는 중문본)  (3) 세무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 자료.  본 방법을 발표하기 전 융자리스계약을 체결한 융자리스임대 측은, 관할 국가세무국에 수출세금환급 자격인증 수속을 보충하고 처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융자리스임대 측 세금환급(면제) 인증의 변경과 말소는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24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장 세금환급 신고, 심사 관리**  **제7조** 융자리스임대측은 융자리스화물의 통관수출일 또는 융자리스해양건설구조물의 최초 임대료를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의 다음 달부터 다음 해 4월 30일 전의 각 증치세 납세신고기간 내, 관련증빙을 전부 수취하여 관할 국가세무국에 융자리스화물의 증치세, 소비세 환급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제8조** 융자리스임대 측이 융자리스화물 세금환급을 신고할 때, 융자리스계약서상 상이한 융자리스화물은 구분하여 신고하고, 신고서의 명세표 중 “세금환급(면제) 업무유형”란에 “RZZL”이라 기입하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융자리스수출화물인 경우, 수출화물통관서(수출세금환급 전용)을 제출하고  (2) 융자리스해양건설구조물인 경우, 해양건설구조물의 임차인으로부터 최초 임대료를 수취할 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3) 융자리스화물을 구입하고 취득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공제증빙) 또는 해관 (수입증치세)전용 납부서. 융자리스화물이 소비세가 부과되는 화물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세 세수 (수출화물 전용)납부서 또는 해관 (수입소비세)전용 납부서를 제출해야 하고  (4)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기한이 5년(포함) 이상인 융자리스계약서(법적 효력이 있는 중문본)  (5) 융자리스해양건설구조물인 경우, 해상석유천연가스 채굴기업이 등재되어 있는 화물인수 명세서를 제출하며  (6) 세무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 자료.  **제9조** 융자리스임대측은 융자리스화물을 구입하고 취득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해관 (수입증치세)전용 납부서의 공제를 이미 신고한 경우, 세금환급 신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세금환급을 이미 신고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해관 (수입증치세)전용 납부서는 융자리스임대 측이 매입세액 공제를 재차 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증치세 일반납세인에 해당하는 융자리스임대 측이 융자리스화물을 구입하고 취득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는 융자리스임대 측이 규정된 인증기한 내 인증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11조** 관할 국가세무국은 재세 [2014] 62호 문건에 규정된 산출방법에 따라, 융자리스화물에 대한 세금환급을 심사 및 심사비준 해야 한다.  **제12조** 융자리스임대 측이 세금환급을 신고할 때 제출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는 융자리스임대 측이 증치세 일반납세인인 경우, 관할 국가세무국의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감사정보 대조결과 오류가 없어야만 세금환급을 처리할 수 있으며; 융자리스 측이 증치세 일반납세인이 아닌 경우, 관할 국가세무국은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우편을 발송하여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가 진실하고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 납부하였음을 확인해야만 세금환급을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 임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나 반환하는 융자리스화물에 대하여 융자리스임대측이 즉시 자발적으로 관할 국가세무국에 보고하고 아래의 규정에 따라 기존의 세금환급액을 보충하여 납부해야 한다.  (1) 상술한 융자리스수출화물을 재수입하는 경우, 관할 국가세무국은 규정에 따라 융자리스임대측의 기존 세금환급액을 추징하여 납부하게 하고 융자리스수출화물에 대하여 화물과 관련된 세금을 보충하거나 아직 세금환급을 받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2) 융자리스해양건설구조물을 임대인 측에게 반환하는 경우, 관할 국가세무국은 규정에 따라 융자리스임대 측의 기존 세금환급액을 추징하여 납부하게 해야 한다.    **제4장 부 칙**  **제14조** 융자리스임대 측이 허위로 수출세금환급(면제) 자격을 취득하거나, 융자리스계약을 위조 혹은 임의로 수정하거나, 허위의 세금환급 신고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단으로 세금환급액을 편취하는 경우,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 융자리스화물 수출세금환급에 대하여 본 방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간주 수출화물에 관한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6조** 본 방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융자리스수출화물인 경우, 수출화물 통관신고서(수출세금환급 전용)상에 적힌 수출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융자리스해양건설구조물인 경우, 융자리스임대 측이 최초 임대료를 수취할 때 발급한 세금계산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국가세무총국의 (천진동강 보세항구 융자리스화물 수출세금환급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39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  | **关于发布《融资租赁货物出口退税管理办法》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4年第56号  根据《财政部海关总署国家税务总局关于在全国开展融资租赁货物出口退税政策试点的通知》（财税〔2014〕62号），国家税务总局制定了《融资租赁货物出口退税管理办法》。现予以公布，自2014年10月1日起施行。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2014年10月8日  **融资租赁货物出口退税管理办法**  **第一章 总 则**  **第一条** 根据《财政部海关总署国家税务总局关于在全国开展融资租赁货物出口退税政策试点的通知》（财税〔2014〕62号）的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享受出口退税政策的融资租赁企业（以下称融资租赁出租方）的主管国家税务局负责出口退（免）税资格的认定及融资租赁出口货物、融资租赁海洋工程结构物（以下称融资租赁货物）的出口退税审核、审批等管理工作。  **第三条** 享受出口退税的融资租赁出租方和融资租赁货物的范围、条件以及出口退税的具体计算办法按照财税〔2014〕62号文件相关规定执行。    **第二章税务登记、出口退（免）税资格认定管理**  **第四条** 融资租赁出租方在所在地主管国家税务局办理税务登记及出口退（免）税资格认定后，方可申报融资租赁货物出口退税。  **第五条** 融资租赁出租方应在首份融资租赁合同签订之日起30日内，到主管国家税务局办理出口退（免）税资格认定，除提供《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出口货物劳务增值税和消费税管理办法）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2年第24号）规定的资料外（仅经营海洋工程结构物融资租赁的，可不提供《对外贸易经营者备案登记表》或《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收发货人报关注册登记证书），还应提供以下资料：  （一）从事融资租赁业务的资质证明；  （二）融资租赁合同（有法律效力的中文版）；  （三）税务机关要求提供的其他资料。  本办法发布前已签订融资租赁合同的融资租赁出租方，可向主管国家税务局申请补办出口退税资格的认定手续。  **第六条** 融资租赁出租方退（免）税认定变更及注销，按照国家税务总局公告2012年第24号等有关规定执行。  **第三章退税申报、审核管理**  **第七条** 融资租赁出租方应在融资租赁货物报关出口之日或收取融资租赁海洋工程结构物首笔租金开具发票之日次月起至次年4月30日前的各增值税纳税申报期内，收齐有关凭证，向主管国家税务局办理融资租赁货物增值税、消费税退税申报。  **第八条** 融资租赁出租方申报融资租赁货物退税时，应将不同融资租赁合同项下的融资租赁货物分别申报，在申报表的明细表中“退（免）税业务类型”栏内填写“RZZL”，并提供以下资料：  （一）融资租赁出口货物的，提供出口货物报关单（出口退税专用）；  （二）融资租赁海洋工程结构物的，提供向海洋工程结构物承租人收取首笔租金时开具的发票；  （三）购进融资租赁货物取得的增值税专用发票（抵扣联）或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融资租赁货物属于消费税应税货物的，还应提供消费税税收（出口货物专用）缴款书或海关（进口消费税）专用缴款书；  （四）与承租人签订的租赁期在5年（含）以上的融资租赁合同（有法律效力的中文版）；  （五）融资租赁海洋工程结构物的，提供列名海上石油天然气开采企业收货清单；  （六）税务机关要求提供的其他资料。  **第九条** 融资租赁出租方购进融资租赁货物取得的增值税专用发票、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已申报抵扣的，不得申报退税。已申报退税的增值税专用发票、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融资租赁出租方不得再申报进项税额抵扣。  **第十条** 属于增值税一般纳税人的融资租赁出租方购进融资租赁货物取得的增值税专用发票，融资租赁出租方应在规定的认证期限内办理认证手续。  **第十一条** 主管国家税务局应按照财税〔2014〕62号文件规定的计算方法审核、审批融资租赁货物退税。  **第十二条** 对融资租赁出租方申报退税提供的增值税专用发票，如融资租赁出租方为增值税一般纳税人，主管国家税务局在增值税专用发票稽核信息比对无误后，方可办理退税；如融资租赁方为非增值税一般纳税人，主管国家税务局应发函调查，在确认增值税专用发票真实、按规定申报纳税后，方可办理退税。  **第十三条** 对承租期未满而发生退租的融资租赁货物，融资租赁出租方应及时主动向主管国家税务局报告，并按下列规定补缴已退税款：  （一）对上述融资租赁出口货物再复进口时，主管国家税务局应按规定追缴融资租赁出租方的已退税款，并对融资租赁出口货物出具货物已补税或未退税证明；  （二）对融资租赁海洋工程结构物发生退租的，主管国家税务局应按规定追缴融资租赁出租方的已退税款。    **第四章 附 则**  **第十四条** 融资租赁出租方采取假冒出口退（免）税资格、伪造或擅自涂改融资租赁合同、提供虚假退税申报资料等手段骗取退税款的，按照有关法律、法规处理。  **第十五条** 融资租赁货物出口退税，本办法未作规定的，按照视同出口货物的有关规定执行。  **第十六条** 本办法自2014年10月1日起施行。融资租赁出口货物的，以出口货物报关单（出口退税专用）上注明的出口日期为准；融资租赁海洋工程结构物的，以融资租赁出租方收取首笔租金时开具的发票日期为准。《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天津东疆保税港区融资租赁货物出口退税管理办法）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2年第39号）同时废止。 |